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88 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 송재봉·강준현·복기왕

강훈식 · 김성환 · 백승아

김우영 · 이광희 · 장종태

조승래 • 이재관 • 박수현

이강일 · 이연희 · 황명선

임광현 · 이정문 · 황정아

박범계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 및 시, 군,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 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런데 「지방자치법」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 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).

법률 제 호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자치구"를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, 시·군·자치구"로, "지방자치단체조합을"을 "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지방자치단체"란 「지방자	2
치법」 제2조제1항 및 제2항	
에 따른 <u>특별시·광역시·특</u>	<u>특별시·광역시·특</u>
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 및	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, 시
<u>시·군·자치구</u> 와 같은 법 제	<u>• 군 • 자치구</u>
176조제1항에 따른 <u>지방자치</u>	<u>지방자치</u>
단체조합을 말한다.	단체조합 및 제199조제1항에
	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